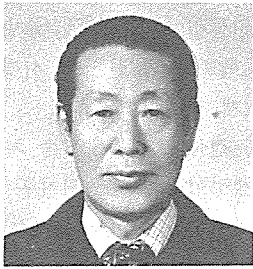


協會發展과 士法



姜奉辰
本協會 5, 10代 會長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와 같이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원천적 원인은 건축사법에 그 존재가치가 보장되고 발전인자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건축사법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1536호로 제정 공포된 후, 1977년 12월 31일, 1980년 1월 4일, 1982년 4월 3일 및 1984년 12월 31일의 4회에 걸쳐 개정된 것이 현행 建築士法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특별법인 建築士法의 규정에 의하여 창립된지 어언간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이제 협회창립 20주년을 맞아 「협회 20년사」를 발간 함에 있어, 「협회 20년의 회고」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집필 의뢰를 받고 보니, 협회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하여 무엇을 먼저 써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다.

그것은 창립당시, 회원수 300여명에, 연간 예산액 300여 만원에 불과하고, 협회자체 사무실이 없어, 중구 회현동 3가 2번지 소재 初代 故 金舜河 會長의 개인사무실에 더부살이로 입주 발족하고, 이사회는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김순하 회장의 자택에서 개최하던 협회가, 20년이 지난 오늘에는, 회원수 약 2천300여명에 연간 예산액도 약 18억원이란 거대한 협회로 성장했을뿐 아니라, 강남구 서초동에 자리잡은 建築士會館은 건축계에 그 위용을 자랑할 만큼 비약 발전하여 隔世之感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와같이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원천적 원인은 건축사법에 그 존재가치가 보장되고 발전인자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건축사법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1536호로 제정 공포된 후, 1977년 12월 31일, 1980년 1월 4일, 1982년 4월 3일 및 1984년 12월 31일의 4회에 걸쳐 개정된 것이 현행 建築士法이다.

얼른 보기에는 일반적인 法律制定과 조금도 다른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 建築士法이야말로 5.16혁명 이후 설치된 國家再建最高會議(현 국회와 동일한 기

능을 가진 입법기관임) 마지막날(1963년 12월 16일), 法案提出審議로부터 最高會議 通過公布까지 만 2개년에 걸쳐 파란만장, 우여곡절을 거듭한 건축계의 논쟁끝에 겨우 햇빛을 보게 됐다는 것을 아는 建築人은 그리 많지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같은 입법과정에서의 논쟁은 공포 후에까지 계속되어 마침내 建築士試驗 應試拒否란 후유증까지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다.

논란의 대상이 된 주요골자는 i) 設計圖書의 登錄問題, ii) 應試資格 年限問題, iii) 免許에 관한 특례문제, iv) 新協會設立까지의 職務代行問題 등이었다.

이중 i) 設計圖書의 登錄問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항에 관해서는 지면관계로 논급을 생략하고, 논제의 평론이라 할 수 있는 i) 항의 設計圖書의 등록문제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建築士法 제정 공포당시의 이에 대한 條文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제22조(設計圖書의 登錄) 건축사협회의 會員이 저작한 설계도서는 建築士協會에 登錄을 받은후가 아니면 行使할 수 없다.

즉, 1977년 12월 31일 건축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14년 동안은, 현행법과 같은 申告制가 아니고, 登錄制였던 것이다.

이 條文은 현 協會의 전신이었던 「從前의 大韓建築士協會」에서 最高會議의 지시를 받아 법안의 초안작성 때에 삽입한 조문으로서, 당시 그 성격과 필요성

22條와의 相對性關係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었다.

i) 신법이 공포됐을 때, 無免許者 및 二重職者가 저작한 설계도서의 행사를 방지하고,

ii) 위와 같은 불법설계 행위를 봉쇄함으로써, 新法에 의하여 설립될 새로운協會가 회원의 權益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iii) 협회에 설계도서를 登錄함으로써 建築에 관한 統計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 수립에 공헌할 수 있고,

iv) 회원의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納稅義務를 정당하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심의 도중, 건축계 일부에서

i) 建築士의 自由를 부당하게 속박하는 협회가 될 우려가 있고

ii) 회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協會가 圖書登錄을 강요하여 中間搾取 機關으로 될 염려가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本條削除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었으나 삭제할만한 명분이 못되었기 때문에 圖書登錄규정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大韓建築士協會는 이 設計圖書의 登錄制度 덕분에 오늘과 같이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圖書登錄制度를 전국에 실시하게 됨으로써協會는 본부를 비롯 각 市道支部와 주요도시의 分所에 이르기까지 결속된 組織網과 강력한 事務體系를 확립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협회기구가 방대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방대해진協會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을 것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협회의 운영비는 결국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바, 建築士協會는 국내외의 어느 건축사단체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會費制度를 채택한 것이다.

즉, 모든 회원이 균등하게 매월 내는 일정회비 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실적에 따른 일정비율에 의한 실적회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 이 실적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은 회원이 설계도서를 협회에 登錄할 때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그 율은 매년 협회의 정기총회에서 회원 스스로가 결의,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개발계획 정책에 수반한 고도성장의 물결에 따라, 건축경기가 상승하고, 국토건설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원의 업무량도 급격히 증대 되었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실적회비 납부액도 매년 증가했기 때문에 협회는 일취월장의 발전을 거듭 하였다.

호사다마란 속담도 있듯이 이 무렵에, 건축계 일부에서 또다시 圖書登錄制의 폐지론이 대두되어 왈가왈부하다가, 마침내 1977년 12월 31일 法律 3074호로 개정된 것이 아래와 같은 현행법인 것이다.

제22조(設計圖書의 申告)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즉, 종전의 登錄制가 申告制로 바뀐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종전에 협회발

전의 원동력이 됐던 登錄制가 개정됨에 따라, 협회는 그 운명이 시행령 여하에 좌우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건축계 일부에서는 차라리 시행령을 제정할 때, 건축허가후 다시 말하면 설계도서의 행사후, 일정기간 내에 申告토록(事後申告)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 하는 사람도 많았었다.

심지어 主務當局 실무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미 초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는 협회를 무력화해서 발전에 제동을 걸고, 설계활동을 자유화 하려는 일부 건축인들의 책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협회 집행부가 비상한 노력과 섭외활동을 벌인결과, 1978년 10월 6일 대통령령 제9183호로 다음과 같이 시행령의 전문개정 공포를 보았던 것이다.

제21조(設計圖書의 申告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申告는 建築許可申請前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正面圖, 平面圖, 追定工事 金額 및 설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상기조문중 下線을 그은 부분은 1981년 6월 24일 設計圖書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母法은 종전의 「登錄」을 「申告」로 개정됐지만, 시행령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事前申告」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된 것이다.